

	자율전공학과운영및 전공배정에관한규정	규정번호	3-4-31
		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일자	2025.12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자율전공학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2조의2에 따라 자율전공학과의 운영 및 전공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전공배정이란 자율전공학과에서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에 대해 전공(학과)을 배정하고, 배정된 학과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자율전공학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교육과정) ① 자율전공학과의 전공배정 전 교육과정은 교양교과목, 전공탐색교과목, 융합교과목을 포함하며, 타 학과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.
② 전공배정 이후 교육과정은 배정된 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른다.

제5조(전공배정 전 수강신청) ① 각 학과에서는 자율전공학과 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전공교과목을 지정하여 안내하여야 하며, 자율전공학과 학생은 전공탐색을 위해 희망하는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자율전공학과 학생의 전공배정 전 수강신청은 대학의 수강신청 기간 및 수강신청변경 기간을 준수하며 지도교수의 수강 지도 후에 시행한다.

제6조(전공배정 시기) 자율전공학과 입학생의 전공배정 시기는 1학년 1학기 말에 실시한다.

제7조(전공배정 기준) ① 전공배정은 대상자의 희망 전공(학과)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전공배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
③ 전공배정학과는 교원확보율, 교육여건에 따라 전공배정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,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학생의 1학년 1학기 성적의 평점평균, 취득학점 순으로 배정한다. 전공배정학과에서 탈락한 경우 다음지망 순위의 전공배정학과로 한다.

④ 학과에 따라 입학 시 입학지원조건(면접, 장애인증명, 성인학습자 등)이 있는 경우, 전공배정학과는 전공배정 상담 시 유사한 지원조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8조(전공배정 제한) 다음 호에 해당하는 전공배정은 불허한다.

1. 간호학과, 임상병리학과, 방사선학과, 물리치료학과, 치위생학과, 유아교육과, 응급구조학과
2. 계약학과, 산업체위탁교육과정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

제9조(전공배정 신청 및 절차) ① 자율전공학과 신입생에 대해 희망전공조사 및 진로지도를 위해 [별지 제1호서식]의 전공배정 사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자율전공학과 1학년 1학기 이수예정자는 학기말 [별지 제2호서식]의 전공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자율전공학과는 전공배정 신청서를 전공배정 예정학과의 학과장에게 확인을 받아 교무처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1학년 1학기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 전공배정 전 휴학을 할 경우에도 제2항을 따라야 하며,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⑤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전공배정은 제1항의 진로지도 자료를 근거로 학생 또는 보호자 상담 후 임의로 학과장이 진행할 수 있다.

⑥ 교무처는 최종 전공배정 결과를 다음 학기 시작 전 자율전공학과와 전공배정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이수학점 인정) 자율전공학과에서 1학년 1학기 취득한 학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, 전공배정학과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정한다.

호	자율전공학과에서의 이수과목		전공배정 시 이수구분
1	자율전공학과 전공교과목		전공
2	교양교과목		교양
3	융합교육과정		전공(융합)
4	타학과교과목	전공배정학과 동일하거나 대체가능 교과목	전공
		전공배정학과 이외 교과목	인점선택

제11조(자율전공학과운영위원회) ① 자율전공학과의 전공배정 및 학과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자율전공학과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

② 위원은 교무처장, 교무부처장 및 자율전공학과 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,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용하고, 그 외의 학점인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